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 규정(안 제1조의3)

-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 2)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상각, 매각의 계획 및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의 상각 또는 매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당해 연도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채권
3.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5.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조의3(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의 상각 또는 매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공단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u> <u>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당해 연도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채권</u> <u>3.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u>

	<u>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 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u> 4. <u>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u> 5. <u>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 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u>
--	---